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8
------------	-----

발의연월일 : 2016. 6. 30.

발 의 자 : 설 훈 · 이인영 · 문미옥

이찬열 · 김병관 · 고용진

양승조 · 전혜숙 · 서영교

최명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명시하여 빈곤아동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시·도지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기본계획의”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기본계획”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1. ~ 4. (생략) <u>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u>